금융위원회	보도자료	신용회복위원회

보도시점 2026. 11. 16.(월) 조간 배포 2026. 11. 13.(금) 16시

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, 이제 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.

-「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」 온라인 창구 개설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66. **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** (4.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)
【대통령 업무보고 과제】 **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**

✓ **「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」 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**

▸ 11.16일(월)부터 신용회복위원회 **홈페이지·모바일 앱**에서도 **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없이, 언제 어디서나 「원스톱 지원」 신청 가능**

✓ **연 60% 초과 초고금리 사채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라는데?**

▸ '25.7.22일부터 연 이자율 60% 초과 불법사채 등 **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·이자 모두 무효** → 금감원에서 **무효확인서**를 발급받아 **활용 가능**

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분들께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**방문하지 않고도** 「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」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**온라인 창구**를 **개설**한다.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**'26.11.16일(월)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**에서도 **원스톱 지원**을 이용하실 수 있다.

아울러 **피해자분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,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** 등 **주요 제도개선**과 **무효확인서 활용 방법**을 안내한다.

< 「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」이란? >

■ **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드립니다.**

❶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**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**
❷ **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** (☞ 원금·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)
❸ **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** 및 **법률상담** (☞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)
❹ **불법추심**에 이용된 **전화번호·SNS계정 이용중지** 및 **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**
❺ **경찰 수사의뢰** (☞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 연계)
❻ **신복위 채무조정 및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 연계**

※ **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.**

Ⅰ.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창구 개설

☞ **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?**

· **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· 온라인 신청은 **24시간 가능**하므로, **야간·주말**에도 **원하는 때**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·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**방문신청과 똑같이 전담자가 배정**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간 「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」 서비스는 **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**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**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**되었다.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, **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,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**하거나, **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** 등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.

11.16일(월)부터는 **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(cyber.ccrs.or.kr)와 모바일 앱**에서 「**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**」을 **온라인으로 신청**할 수 있다.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, 피해금액 등 **최소한의 정보만 입력**하면 **신청이 완료**된다.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**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☎1375)로 문의**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.

신청이 접수되면 **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**되며, 전담자는 **전화·문자로 연락**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**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**를 진행한다.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, 무효확인서 발급, 수사의뢰, 채무조정·복합지원 연계 등을 **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**한다.

Ⅱ. 「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」 서비스 운영현황

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이후 약 8개월간 1,239명이 **피해상담**을 받았고, 그 중 987명이 **불법채무** 7,231건(1인당 평균 약 7.3건)**을 신고**하였다.

<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(2.23.~10.31.)>

상담(명)	접수(명) (불법채무(건))	신복위 경고조치(건)	전화번호·SNS 이용중지 조치의뢰(건)	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(건)	무효확인서 발급(건)	수사의뢰(명)	계좌정지 조치의뢰(건)**	복합지원(명)	
								채무 조정	금융·고용·복지 연계
1,239	987 (7,231)	5,469	215	2,623	192	1,178*	116	123	63

* 불법사금융업자 1,178명(채무자 기준 219건)
** 금감원 접수건 포함 **총 321건**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(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)

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,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**불법추심 중단**과 **채무종결**을 신속히 요구하고, 이 중 776건은 **채무종결 합의**를 이끌어냈다. 또한 186명의 **피해자분**들께는 채무조정, 정책서민금융, 고용·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였다.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분들이 **불법추심 대응** 및 **피해회복 소송 등**에 **활용**하실 수 있도록 **무효 확인서** 192건을 **발급**하였으며, 2,623건에 대해서는 **대한법률구조공단**과의 연계를 통해 **채무자대리인**을 **선임**하여 지속되는 추심에 대응하였다.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**불법사금융업자** 1,178명에 대해 **경찰**에 **수사**를 **의뢰**하였다.

<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사례 >

■ **[사례 1] 소액 반복 차입 피해(40대 A씨)**

·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텔레그램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세 차례 총 180만원을 빌려 310만원을 갚음(**연 이자율 약 867%**). 추가로 빌린 80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원스톱 지원을 신청함

⇨ 전담자는 업자와 직접 통화해 A씨의 어려운 형편과 이미 과도한 이자를 받아간 점을 들어 채무종결을 요구했고, 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**남은 채무 135만원을 종결 처리**함. 이후 **개인파산(신속면책) 신청**을 통한 장기연체채무 정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연계를 지원함

■ **[사례 2] 돌려막기로 인한 다중 채무 피해(40대 B씨)**

· 상품판매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는 결혼 준비로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함(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뒤 50만원 상환, **연 이자율 약 3,476%**).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**거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21곳, 빌린 돈은 970만원**으로 불어남. 상환이 어려워지자 업자들은 밤늦게 연락해 예비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, 이에 원스톱 지원을 신청함.

⇨ 전담자는 상담 당일 21개 업자 모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함. 업자들이 응하지 않자 **채무자대리인 선임·무효확인서 발급** 등 후속 피해구제 절차로 연계함

Ⅳ.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안내

1 주요 제도개선 사항

'25.7.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**연 60%를 초과하는 초고금리**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, 폭행·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**반사회적 대부계약**은 **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**이다. 이자율이 연 60% 이하더라도,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**이자는 무효**이다. 따라서 피해자는 **무효인 부분**은 **갚지 않아도 되고**, 이미 갚은 돈은 **반환**을 **청구**할 수 있다.

2 무효확인서 활용방법

금융감독원은 **반사회적 대부계약**('25.7.22.이후 체결) **피해자**에게 **금융감독원장 명의**의 **「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」**를 **발급**하고 있다. 피해자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「**원스톱 지원**」을 이용하거나,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「**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**」를 통해 **무효확인서 발급**을 **신청**할 수 있다.

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**원금·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**를 보내고, 발급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**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**한다.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**상환 거부 및 추심 중단을 요구**할 수 있고, **부당이득 반환 청구, 수사·재판 과정**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.

※ 피해회복소송 제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지원도 이용 가능

< 무효확인서 활용 피해구제 사례 >

■ **[사례] 무효확인서를 인용한 형사 무죄 판결**(대구지방법원, '26.9.29.)

· 피해자가 상품권 예약판매(**20만원**을 현금으로 받고, 20일 뒤 **30만원 상당 상품권**을 보내는 방식)로 돈을 빌렸다가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자, 업자들이 피해자를 **사기 혐의로 고소**

· (법원 판단) **금감원 무효확인서**를 근거로 해당 거래를 **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**으로 인정하고, 업자들은 **고율의 이자를 노리고 회수 불능 위험을 감수**한 것이라며 **무죄를 선고**

Ⅴ. 향후 계획

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**신청·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, 신청 건이 **지연 없이 처리**되도록 **이용자 의견**을 반영해 **온라인 서비스 운영**을 계속 점검·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또한, 오는 **'26.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**에 **경찰관**을 **파견**하고, 상담 단계에서도 **수사의뢰**가 이루어지도록 **절차**를 **개선한다.**

앞으로도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**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**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, **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** 원스톱 지원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<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(피해 예방 권고문) >

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,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375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연이율 60%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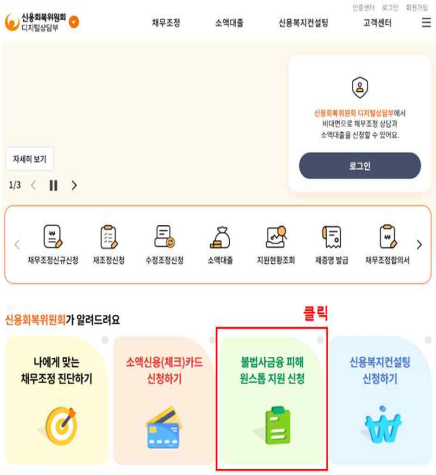
※ 한국기자협회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('25.12.29일)한 「**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**」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,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'**피해 예방 권고문**'을 **기사 하단에 게재**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홍상준	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남	(02-2100-2511)
담당 부서 <공동>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	책임자	팀 장	민혁진	(02-3145-8277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동명	(02-3145-8289)
	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피해자지원팀	책임자	부 장	강효정	(02-750-1201)
		담당자	팀 장	서동백	(02-750-111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지원 온라인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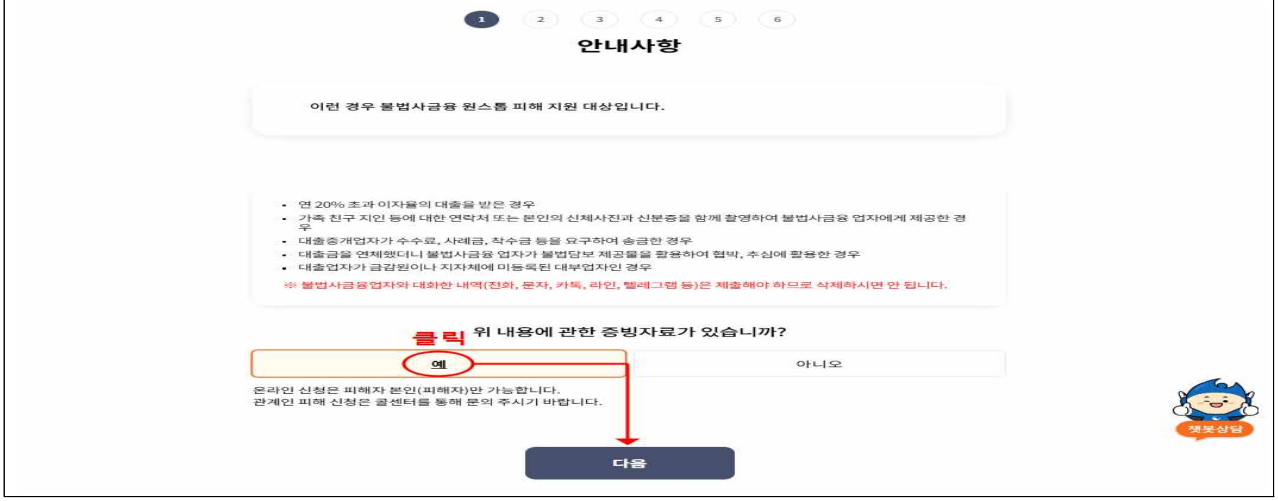
❶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(디지털상담부, cyber.ccrs.or.kr) 또는 모바일 앱 접속
※ 로그인 필수(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)



❷「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신고」신청 화면



❸「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신고」안내 화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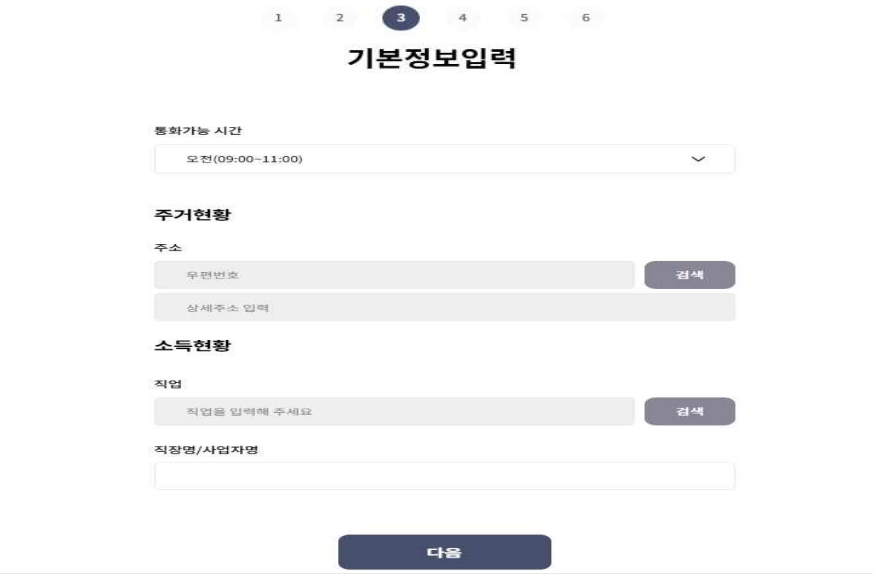


❹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약관 동의(필수)



❺ 기본정보 입력

※ 기본정보는 모두 입력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 가능



❻ 피해등록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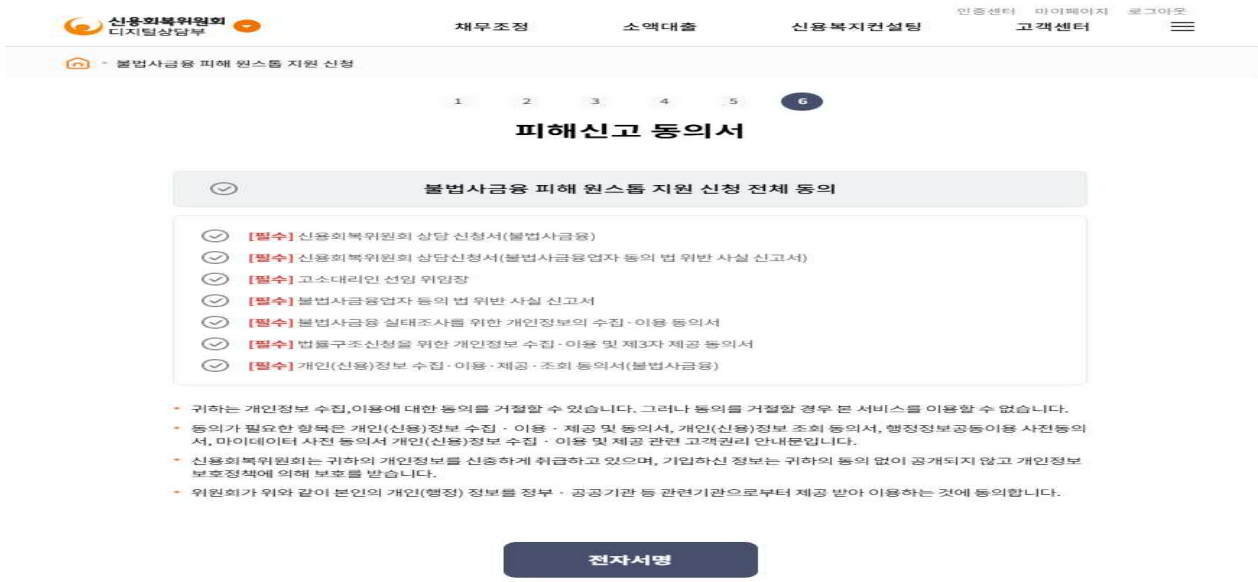
※ 혐의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를 통해 기재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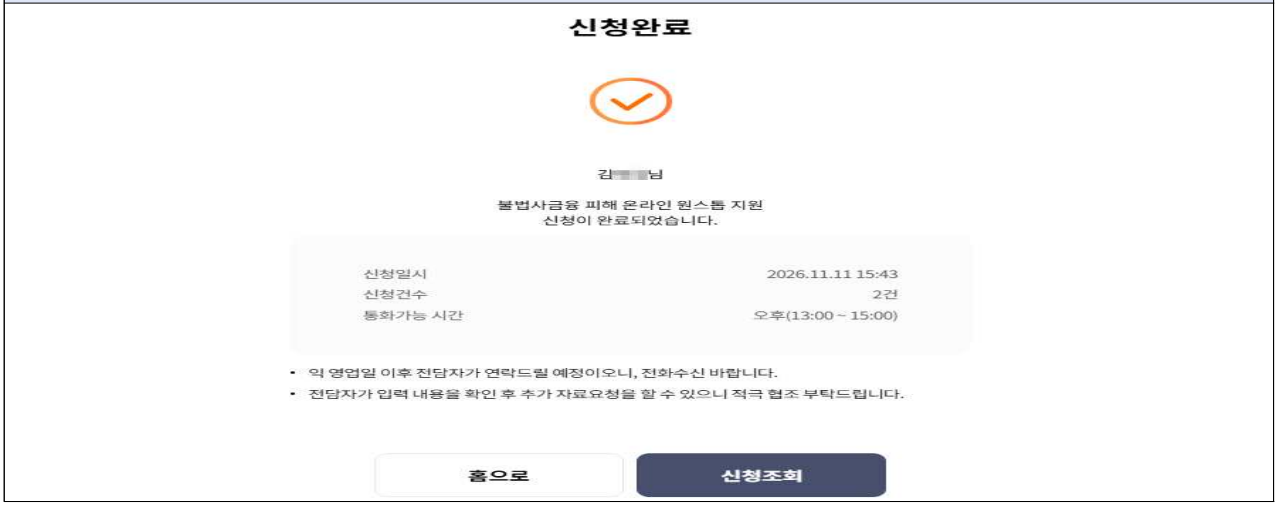
❼피해신고서 작성
※ ❻피해등록에서 작성한 협의업체명만 신고서 작성 가능



❽ 피해신고서 동의 전자서명



❾ 신청완료 화면



참고 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(오프라인)

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**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**하거나 **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**(☎1375) 또는 **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** 후 내방하면 된다. 해당 **센터 위치 및 연락처**는 다음과 같다.

<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>

지부	주소	연락처
서울중앙	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, 한국프레스센터 6층	02-750-1281
관악	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6(봉천동 853-1), 호산빌딩 9층	02-6337-0814
광진	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(구의동 546-4),테크노마트21 사무동 5층	02-3436-6480
노원	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, 3층	02-3392-4534
원주	강원 원주시 시청로 36(무실동 1718-4), 씨티타워 2층	033-765-1806
인천	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, 삼성생명빌딩 15층	032-864-8193
고양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(장항동 890-7), 흥국생명빌딩 6층	031-902-4851
의정부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(의정부동 141-3), 한화생명빌딩 4층	031-844-9702
수원	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, 코스모수원빌딩 8층	031-234-7043
성남	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(수내동 6-5), 예미지빌딩 2층	031-606-8055
안산	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(고잔동 541-2), 남양빌딩 6층	031-482-5368
대전	대전 중구 중앙로 116,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	042-349-0073
청주	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(북문로 1가 9-3), 미래에셋증권빌딩 4층	043-224-9525
천안	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(신부동 467-5), 삼성생명빌딩 11층	041-522-1498
광주	광주 동구 금남로 148, 에이원타워 6층	062-233-2647
전주	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, 세광빌딩 3층	063-255-5946
대구	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, 삼희빌딩 8층	053-428-9380
부산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, 국민연금공단 16층	051-866-0037
사상	부산 사상구 광장로 76(괘법동 558-2), 송원센터빌딩 10층	051-317-4254
창원	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, 이수빌딩 3층	055-292-4304
울산	울산 남구 화합로 138, 삼산동 옥산빌딩 2층 전체 (201호,202호)	052-260-9221
제주	제주 중앙로 165, 제주고용복지+센터 3층	064-902-3257

참고 3 **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·전담 지원제도 안내문**

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· 전담 지원 제도 안내문



불법사금융 종합 · 전담 지원 제도란?

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, 수사의뢰,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피해자
불법사금융 피해 진술
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①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배정
② 피해내역 · 증빙자료 정리
③ 신고서 작성 및 피해신고

금융감독원
① 초동조치 · 수사의뢰
② 불법추심 수단 차단
③ 채무자대리인 연계

경찰청
안전조치 · 수사 진행

대한법률구조공단
채무자대리인 · 소송지원

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전담자는 무엇을 도와주나요?

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, 증빙자료 준비,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, 고용 · 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드립니다.

- 피해내역 정리가 막막하신 분
-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신 분
- 피해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

신용회복위원회 피해신고 지원
- 피해내역 · 증빙자료 정리
- 신고서 작성 · 피해신고
- 불사금업자 문자경고

신용회복위원회 피해회복 지원
- 채무조정 · 서민금융
- 고용 · 복지 연계
- 심리상담 연계 등

전담자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(전화)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☎1375)로 상담 신청
(방문)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(전국 22개 전담센터)
※ 콜센터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금융위원회 · 경찰청 · 금융감독원 · 신용회복위원회 · 서민금융진흥원 · 대한법률구조공단